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가입 안내

- 정부에서는 WTO의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국가간 상호 인정에 대비하기 위해 건축사법 개정(2011. 5. 30)을 통하여 UIA권고 기준에 의한 교육, 실무수련, 자격검증, 자격등록, 갱신등록, 계속교육을 근간으로 한 『건축사자격제도』를 도입하였고, 건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과 등 주요한 건축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에 대한건축사협회는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건축사등록원』, 『건축사교육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계 발전을 위한 건축제도의 개선 및 정책 개발, 건축정보 제공, 건축사의 권익신장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협회 정관과 회원신고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하면 건축사사무소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였습니다.
-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등록건축사는 건축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소임을 다하여 건축계가 하나 되는 건축문화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종류

정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중 협회에 입회한 자
준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축사와 외국에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협회에 입회한 자

■ 회원혜택

- 건축전문지 월간 <건축사>, 건축계 정례지 격주간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제공
- 건축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협회주관 각종 전시회 참여 기회 제공
- 건축관련 법령자료 제공
- ARCSIA 등 국제건축전 출품 기회 부여
- 회원복지서비스 혜택
- KIRA NEWS 제공
- 건축관계 법령 질의·상담 및 대정부 건의
- 해외의 각종 건축관련 기술정보 및 국제행사 참여 기회 제공
- 건축사 실무교육 정보 제공
- 정부포상 추천

■ 정회원 가입절차

- 건축사 자격등록 후, 해당 시·도건축사협회 신고서류 제출 및 회비납부
- 제출서류 : 정회원 신고서, 건축사 자격등록증(전자문서), 반명함판사진 2장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추가 서류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 회비안내

1. 회비의 종류 및 금액

구분	납부내용	납부처
정회원	· 입회비 : 300만 원(입회 시 1회) · 월정회비 : 3만 원(매월) · 시·도건축사회 회비(입회비 및 월정회비) : 해당 시·도건축사회 회칙에 따름	시·도건축사회
준회원	· 입회비 : 50만 원(가입시 1회) · 연회비 : 6만 원	

2. 회비 사용처

- 입회비 및 정회원(준회원) 회비 : 건축문화발전 및 회원권익증진, 협회조직관리 운영자금 등

■ 본협회 및 시·도 건축사회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분	전화번호	FAX번호
본협회	(02)3415-6800	(02)3415-6855	대 전	(042)485-2813~5	(042)485-2818	충 남	(041)338-4088	(041)338-4188
서 울	(02)581-5715~8	(02)523-2284	울 산	(052)274-8836	(052)268-8837	전 북	(063)251-6040	(063)251-6048
부 산	(051)633~6677	(051)634-2966	세 종	(044)862-6336	(044)862-6226	전 남	(061)285-7563~4	(061)285-7567
대 구	(053)753-8980	(053)756-9049	경 기	(031)247-6129~30	(031)242-7072	경 북	(054)859-8170	(054)859-8175
인 천	(032)437-3381~4	(032)437-3385	강 원	(033)254-2442	(033)255-2083	경 남	(055)246-4530	(055)245-4530
광 주	(062)521-0025~6	(062)528-0026	충 북	(043)223-3084~6	(043)223-3089	제 주	(064)752-3248	(064)756-3248

* 회원가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도건축사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등록실적팀(☎ 02-3415-685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시각의 모순

Contradictions of different institutional perspectives of ‘house’

글. 홍성용
Hong, Sungyong
본지 편집국장

몇 해 전 한 정치인이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ing) 곳이어야 한다는 발언과 함께 경고성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녀의 기대와 달리 ‘집’은 사는(Buy) 것(Product)의 가치로 맹위를 떨치며 요란스럽게 자산증식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키웠다.

‘집’의 본질은 원천적으로 인간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거처다. 오랜 기간 ‘집’은 그 역할에 충실했고, 의식주의 하나로 존재했다. 그런 집이 20세기에 들어서 갑자기 부수적 기능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른바 자산화되고, 수익화된 ‘부동산=집’의 등장이다. 그리고 의식주 중 하나인 집의 가격 불안정성은 모두의 불만 대상이 되었고, 당연히 정치인들의 구호와 정책에 등장했다. 이렇게 과잉의 자산증식 수단이 된 ‘집’을 바라보는 건축사들의 마음은 불편하다.

전문가인 건축사들은 ‘집’에 대한 본질적 가치와 의미를 고민하고 이를 다루는 것을 우선한다. 그런데 건축사에게 건축을 의뢰하는, 특히 ‘집’을 상품으로 의뢰하는 사업가들의 요구에 난감해진다. ‘집’의 상품화가 강조된 시장 상황에선 ‘가치’가 의사결정의 우선순위에 밀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산화, 도구화된 현재의 ‘부동산=집’이라는 공식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오늘날의 ‘집’은 자산인 동시에 또 다른 의미의 가치를 지닌다. 즉, 사는(Buy) 것의 성격과 사는(Living) 곳의 성격 모두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복합적 21세기의 ‘집’을 하나로만 정의하려는 시선 때문에 자주 왜곡되고 틀어지고 있다. 근본적인 접근이 아닌 부수적인 접근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

한 두려움과 걱정, 과잉된 부정적 시각은 계속해서 임기응변식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 결과 2021년 대한민국의 ‘집’을 다루는 각종 제도는 서로 충돌하는 모순을 만들어 내고 있다. 정치인들의 법안 발의도, 중앙정부의 행정가들도 이런 모순 창조에 동참하고 있다.

다중생활시설,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의 공통점은 뭘까? 바로 모두가 집의 기능을 하지만, 건축법상 집이 아니라는 것이다. 건축법에서 집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며, 관련법들의 적용을 받는다. 살기 위한 집도 있지만, 매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량으로 집을 건축하기에 별도의 ‘주택법’도 존재한다. 주택은 주민등록이 가능한 대상이다. 주민등록이 되어야 ‘집’이 된다. 이는 거주자의 권리와 법적 행위 행사를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런데 ‘다중생활시설’이라는 법적 용어로 정의된 고시원에도 주민등록이 된다. 그렇다면 ‘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은 ‘집’인가?

이는 세금과 관련이 있다. 다주택 소유, 잉여주택의 독과점적 소유문제를 주거 안정을 해치는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때문에 다주택자에게 누진세를 부과하게 했다. 또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와 소유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세, 취득·등록세 등 각종 세금 부과 대상이다.

자! 그렇다면 다중생활시설은 ‘집’인가, 아닌가? 도시형 생활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은 여러 가지로 달리 정의된 주택에 대한 용어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면서 주택이다. 그런데, 이런 규정과 제도들이 건축 인허가를 대행하고 설계하는 건축사들 입장에서 보면 어이가 없다. 각 각을 구분하고자 억지로 만든 세부 법 규정의 모순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 집은 집인데, 집이라고 말할 수 없는… 집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절세하는…… 2021년의 집은 괴롭다.